

『국제법무』 제8집 제2호, 2016. 11. 3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A Study on the Concept and Ext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 social unification

김 상 명*
Kim, Sang-Myeon

목 차

- I. 서 론
- II.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개정
- III.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범위
- IV. 결 론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및 공존의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동법상의 지원 대상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논문접수일 : 2016. 07. 29.

심사완료일 : 2016. 10. 27.

게재 확정일 : 2016. 10. 27.

* 법학박사 ·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부교수

대상인 다문화가족의 포섭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맞게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결혼 목적 외국인뿐만 아니라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혼인이 해소된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주민, 장기 유학생도 포섭하는 개념정의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사회 통합

I. 서 론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이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이 다양화 된지 이미 오래다.¹⁾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²⁾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21.제정, 2008. 9. 22. 시행, 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상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 내지 제4조)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1)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08, 201면.

2) 박복순 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44, 여성가족부, 2013.12. 3면; 김유경외,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436면.

이루어진 가족(제2조 제1호), 그리고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제2조 내지 제4조)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상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4조)상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목적이 아닌 이주노동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나 그 자녀(제14조)이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³⁾ 또한 장기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⁴⁾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해석론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족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과 그 특징을 알아 본 후에,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동법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도록 다문화가족법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그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개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과 특징

다문화가족법은 우리 사회가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3)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486면; 정혜영,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7호, 안암법학회, 2008. 9, 26면; 박복순 외, 앞의 논문, 3-4면.

4)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3D업종이라 불리는 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노동현실에 기인한다. 실업률은 높은 반면 기업에서는 일손을 구할 수 없기에 기업들의 눈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100만명 시대에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 현상이 발생하고, 그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나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마련된 법이다.⁵⁾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8일 고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7년 5월 2일 장향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표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이다.⁶⁾ 이것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3. 21. 공포되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⁷⁾ 이러한 다문화가족법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⁸⁾

첫째, 다문화가족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⁹⁾의 집행법적 성격을 가진다.¹⁰⁾ 이러한 이유로 법안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본계획 및 위원회 관련 규정

5)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02, 510면.

6) 다문화가족지원법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2007.06.

7) 이경희, 위의 논문, 511면; 이승우,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 연구」 제23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9.11, 216-218면; 김윤나, “시민청소년관점에서 비추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 및 발전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4권 2권, 대한교육법학회, 2012. 8, 7면.

8) 김윤나, 위의 논문, 7면.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 17. 제정 2007. 7. 18. 시행)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들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의 기본 개념 및 정책 대상도 다문화가족법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둘째, 법 내용에 있어 정책 대상에 대한 차별 배제의 형태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적극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사회 통합적 정책현상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법제도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지족지원법의 개정배경과 특징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2009년 12월말 167,090명으로 2008년도 비해 13.8% (144,385명) 증가하고, 이 중 여성은 89.7%, 국적취득자는 24.8%이다. 한편 외국인과 혼인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국제결혼 비율은 10% 이상을 지속하고, 2005년 13.5%를 기록한 후 다소 낮아져 2008년의 경우 11.0%에 달한다. 2009년 귀화외국인의 경우 25,044명으로 한국인과 결혼이 17,141명(기타 7,903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인지(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626명이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국적 미취득자는 1,376,162명(79.0%)으로 이 중 외국인근로자 608,11명(34.9%), 결혼이민자 147,382명(8.5%), 유학생 84,329명(4.8%),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28,414명(16.4%), 기업투자와 취업 등 249,921명(14.3%)에 이르고, 국적 취득자는 158,064명(9.1%)로 혼인귀화 92,316명(5.3%), 기타 일반귀하 및 입양 등 65,748명(3.8%),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자 자녀 207,693명(11.9%)로 나타났다.¹¹⁾

한편, 2012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66,54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귀화자는 283,224명으로 이중 여성은 226,084명, 남성은 57,140명이며, 다문화가족의 만 9~24세 자녀의 수는 66,536명으로 여성은 32,655명, 남성은 33,882명인 것으로

10) 김윤나, 위의 논문, 3면.

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년 통계연보 참조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GbnCd=104000&strFilePath=imm/&strRtnURL=IMM_607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

추정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32.1%, 중국 21.2%, 베트남 18.3%, 일본 5.8%, 미국 2.9% 등이다. 1990년 이후 다문화 가족 가구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전체 다문화가족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53.0%,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26.8%, 한부모 가족은 3.0%로 나타났으며, 2012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평균 자녀수는 0.9%로 나타났다.¹²⁾

이와 같이 급격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법을 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종전에는 ‘출생 시부터 출생 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종전보다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력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해석론에 따라서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¹³⁾

III.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범위

1. 다문화가족의 개념

가. 법2조 제1호 ‘다문화가족’의 의미

현행 다문화가족법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로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지는

12) 최종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법제 발전 방향 연구」, 법제처, 2015.09, 8면.

13) 이경희, 앞의 논문, 533면.

가족(법 제2조 제1호 가목), 둘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법 제2조 제1항 나목)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즉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하 ‘결혼이민자 등’라 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노동자, 북한이주민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새롭게 이주해 온 외국인 가족으로 그 이주 경위나 동기여하는 묻지 않고 폭넓게 포섭하여 차별적 관념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로 볼 때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이주민 등을 포섭하여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 유학생 및 이민자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⁵⁾ 그렇지만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및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법상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인 경우에는 최소한 구성원 중에 국민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이었던 경우에는 인지나 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민이 결합한 경우에만 다문화가족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¹⁶⁾ 따라서 다문화가족이란 혼인뿐만 아니라 혈연(출생 및 인지)과 임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넓게 해석된다.¹⁷⁾ 다만

14) 이경희, 앞의 논문, 512면.

15) 이와 달리 재외동포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이경희, 위의 논문, 512면; 김유경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4, 2008. 12, 86면).

16)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법학논총」 제3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4, 47면에서 “이는 동법 제14조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일방은 국민이라는 전제하에 그 가족이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입법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17) 송오식, 위의 논문, 47면; 이승우,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 연구」 제23권 3호, 가족법학회, 2009.12, 514면.

동법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첫째,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가족인지가 문제가 된다. 다문화 가족법상 다문화가족의 의미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원주의 내지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문화 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화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¹⁸⁾ 그러한 이유는 법상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가족만을 의미하고 외국인 노동자 부부나 유학생 부부 등과 같이 외국인 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비록 국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¹⁹⁾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상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자녀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가족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⁰⁾

둘째,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한 국민은 비록 외국인과 혼인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귀화국민이 출생국민과 혼인하는 때에는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다(나목 참조).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는 국민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반드시 출생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그 지원 대상자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법 제2조 제3호 참조).

나.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의미

18) 박복순외, 앞의 논문, 85면; 이경희, 앞의 논문, 513면;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 제 연구 -한일비교-”,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02, 97면; 다문화주의가 우리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19) 송오식, 앞의 논문, 52면.

20) 이경희, 앞의 논문, 513면; 송오식, 위의 논문, 52면.

다문화가족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이 포함된다. 즉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혼인, 혈연(출생 및 인지), 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²¹⁾ 동법에서 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으나,²²⁾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방은 국민이라는 전제하에 그 가족이 보호대상이 되므로(법 제14조)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를 보면 첫째,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있다. 동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결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혼이민자는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하게 된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동법에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개념이고 귀화를 원하지만 아직 간이귀화의 소정요건(국적법 제6조 제2항)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거나 귀화를 원하지 않고 외국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결혼이민자의 개념을 벗어나 귀화한국인이 되며, 동법상 더 이상 결혼이민자가 아니다. 전자를 결혼이민자라 하고, 후자를 귀화허가를 받은 자라 구분하고 있으나 굳이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²³⁾ 따라서 혼인을 목적으로 이민한자는 국적취득여하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라도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혼인하여야 하고, 귀화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지원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²⁴⁾ 결

21) 송오식, 앞의 논문, 47면; 이승우, 앞의 논문, 514면; 이경희, 앞의 논문, 514면.

22) 이경희, 위의 논문, 514면; 송오식, 위의 논문, 47면.

23) 송오식, 앞의 논문, 48면; 이경희, 앞의 논문, 515면.

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국민과 혼인할 필요는 없으므로 외국인으로서 인지나 귀하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자와 혼인하여도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보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²⁵⁾

둘째, 혼인관계 해소 후의 결혼이민자가 문제가 된다. 결혼이민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독신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생국민과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지만 (국적법 제6조 제3호),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다문화가족법이 독신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²⁶⁾ 또 자녀가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외국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는 견해가 있다.²⁷⁾ 그러나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민법 제779조). 그렇다면 그 경우에 다문화가족법상 출생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가목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²⁸⁾ 또 이러한 자가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나목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셋째, 현행 다문화가족법상으로는 단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

24) 이경희, 위의 논문, 515면.

25) 송오식, 앞의 논문, 48면.

26) 이경희, 위의 논문, 515면.

27) 송오식, 위의 논문, 49면; 이경희, 위의 논문, 516면.

28) 이경희, 앞의 논문, 516면; 송오식, 앞의 논문, 49면.

주민은 다문화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일 이주노동자나 유학생 등이 출생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이민자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⁹⁾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 제2조 제3호 참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그 동기여부나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주민은 헌법이나 국적법으로 보면 외국인으로 볼 수 없지만³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출생국민 혹은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³¹⁾

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혹은 인지가 있어야 한다. 결혼이민자가 혼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속인주의에 의하여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국적법 제2조 제1항),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하더라도 출생국민과 가족을 이루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 1항 가목의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며,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 1항 나목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하게 된다.

외국국적을 가진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피인지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는 인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은 동법상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동법 제2조 1호 나목의 인지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³²⁾ 한편 인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29) 송오식, 위의 논문, 49면.

30) 이경희, 앞의 논문, 516면; 송오식, 위의 논문, 49면.

31) 박복순 외, 앞의 논문, 86면

32) 송오식, 앞의 논문, 51면.

자녀가 인지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1호 가목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하고, 결혼이민자가 귀화요건을 갖추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 1호 나목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인지자가 포함된 가족은 국적취득 전에는 결혼이민자가 아니므로 가목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또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나목의 다문화가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된 자가 포함된 가족은 다문화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므로 피인지자가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달리 취급받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³³⁾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가진 미성년자를 입양하게 되면 양자가 된 미성년자는 결혼이민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2조 1호 가목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받은 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목의 다문화가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³⁴⁾ 그러나 외국인 양자가 특별귀화를 하게 되면(국적법 제7조제1항 1호)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해당하여 동법 제2조 1호 나목의 다문화가족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 여부에 의하여 다문화가족 해당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³⁵⁾

한편 성년자 입양의 경우도 미성년자 입양과 동일하게 귀화허가를 받아야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외국인은 간이귀화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계속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3호). 문제는 교육 및 의료 등의 지원이 급박한 시기에는 지원

33) 이경희, 앞의 논문, 517면: 이경희 교수는 국적법에서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보다 더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적취득요건도 상당히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경우에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34) 송오식, 앞의 논문, 51면.

35) 이경희, 앞의 논문, 518면; 송오식, 앞의 논문, 51면.

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지원을 한다는 결과가 되어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³⁶⁾

2. 다문화가족의 범위

가. 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법에서는 가족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이 다문화 가족의 종류만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다문화가족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법 제2조 1호 가목)과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법 제2조 1호 나목)의 2가지 종류를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족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하여는 정의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이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그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역시 매우 어렵다. 물론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내용 속에서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개념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배우자 관계에만 국한하고 그 혼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인척관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물론 다문화가족법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다.³⁷⁾

민법에서는 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친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친족을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있다(제767조).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친족의 범위

36) 이경희, 위의 논문, 518면.

37) 이경희, 앞의 논문, 520면.

로 유추해석 할 수 있다(제777조 참조). 한편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제779조)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⁸⁾

일반적으로 가족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작은 실체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 공동체 하나의 실체는 사회적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어 진다.³⁹⁾ 성문법에 의하여 규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회 공동체의 특수성과 관련 법규의 제정 목적을 살려 개별적으로 각각 그 가족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지만 민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⁴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혼인

결혼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국민이 혼인 당사자로서 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배우자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속하고 건강가족기본법 제3조 및 다문화가족법 제2조의 요건에도 합치하므로 다문화가족에 해당 한다.⁴¹⁾ 그리고 결혼이민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론이 없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해소되는 경우에 그 후 독신으로 사는 경우라도 건강가족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비록 건강가족기본법상으로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38)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314면.

39) 이경희, 위의 논문, 521면.

40) 송오식, 앞의 논문, 40면.

41) 이경희, 앞의 논문, 521면.

(동법 제3조 제1호 참조),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보아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⁴²⁾

또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는 물론 배우자의 혈족 등과의 인척관계도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이들 사이에 다문화가족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⁴³⁾ 가령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를 양육하고 있으면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⁴⁴⁾

그리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민법상 배우자관계는 해소되지만 재혼하지 않는 한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775조), 결혼이민자 등이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의 부모나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며(민법 제779조 제2항), 이 경우에 배우자의 그 직계혈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다문화가족법 제2조 1호). 따라서 혼인을 원인으로 연결된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면 다문화가족법상의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배우자의 사망 후에 결혼이민자 등이 계속해서 사망한 부의 부모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다문화가족에 속한다고 한다면 민법과 다문화가족법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 등이 배우자의 사망 후에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문

42) 같은 견해: 차인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8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4. 9. 46면; 다른 견해: 이경희, 위의 논문, 521면.

43) 이경희, 위의 논문, 521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관계는 물론 배우자의 혈족 등과의 인척관계도 전부 소멸하므로 이들 사이에 다문화가족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나, 다만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양육하는 등 함께 사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고 한다.

44) 이경희, 위의 논문, 522면: 민법 제779조는 특정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동조 소정의 가족이 없는 독신(1인 가정)을 가족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반드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므로 독신은 다문화가족법상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화가족법의 취지나 지원내용들을 볼 때 결혼이민자 등이 그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의 생활공동체까지 다문화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⁵⁾ 이러한 경우의 생활공동체를 다문화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문화가족법의 취지에 따른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문화가족법상의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명확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문리해석상 다문화가족의 범위도 그 구성이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뿐 그 범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석할 때 결혼이민자 등이 사망 배우자의 전배우자의 자를 계속해서 양육하며 살고 있는 경우 등을 다문화가족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문화가족법의 입법취지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다문화가족법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⁴⁶⁾ 이 부분에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취지와 입법 정책상의 방침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생활공동체가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⁴⁷⁾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를 혼인 그 자체에 의한 가족, 즉 혼인 당사자의 배우자 관계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의 관계는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문화가족법상의 다문화가족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등이 사망한 남편의 자를 양육하고 살고 있는데도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에서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 타당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해석론은

45) 다른 견해: 이경희, 앞의 논문, 522면.

46) 이경희, 위의 논문, 523면.

47) 건강가족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를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건강한 가정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등을 규정하고, 가족에 대한 정의를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법의 적용대상을 더욱 좁게 만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하여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혼인을 원인으로 형성된 인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 인척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법상 지원범위에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강가정기본법상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범위는 달라 질 수 있다.⁴⁸⁾ 결혼이민자 등이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법의 규정만으로는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지만, 가족의 개념을 건강가정기본법(동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근거를 둔다면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에 사망한 배우자의 방계혈족도 포함될 수 있느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배우자의 방계혈족은 비록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지만(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회 정책적·사회 통합적 견지에서 보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다문화가족법상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견으로서는 결혼이민자 등이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4촌,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상 다문화가족법상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혈연과 입양

결혼이민자 등과 혼인 중 출생한 자의 관계는 혼인관계 해소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동법 제2조 1호 가목의 다문화가족이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이 동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경우에 친생친자관계이므로 민법상으로는

48) 송오식, 앞의 논문, 40면.

생계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만(민법 제779조), 다문화가족법상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이 반드시 동거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명백하나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동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 민법상 생계의 동일 여부까지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혈연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법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일정한 외국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취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와 달리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의 의미 속에는 이미 동거라는 요건이 일정부분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⁴⁹⁾ 사견으로서는 동거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컨대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직접양육하지는 않지만 면접교섭권 등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양육에 관여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법상의 지원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이민자 등이 혼인 외의 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에 의하여 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연히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 남성인 결혼이민자 등이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그 때에 다문화가족에 속하게 된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을 인지한 경우에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이 여성인 경우에는 이혼 후 자를 출산하였더라도 분만사실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곧바로 다문화가족이 된다. 그러나 남성인 결혼이민자 등이 이혼 후 전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녀가 되어 친자관계가 인정되고 직접 양육할 경우에는 당연히 다문화가족이 된다. 그러나 이혼 후 300일 이후에 전배우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인지 등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될 여지가 없다(제844조 제2항 후단)고 새겨야 한다.

49) 이경희, 앞의 논문, 523면.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 국민을 입양한 경우에 그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에 입양은 일반 입양 혹은 친양자 입양을 불문한다.⁵⁰⁾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으로 보는 것에는 다른 견해가 없다.

3. 사실혼 관계와 불법체류자 문제

가. 사실혼 관계

결혼이민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로서 혹은 유학생으로서 체류하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나, 혹은 결혼이민자로서 체류 중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나 다시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다문화가족법 제2조 제1항 가 목의 결혼이민자는 법률상 혼인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에 속하지 않으므로,⁵¹⁾ 사실혼 관계로 결합된 가족은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족의 지원 대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동법 제14조).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⁵²⁾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인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없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가 인지하였을 경우에 부자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3조 1항). 그 신고를 한 때에 국적 취득이 인정된다(국적법 제3조 2항).

개정 전에는 출생 시부터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혼 부부와 그 자녀가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어도 다문화가족법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부와 내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50) 송오식, 앞의 논문, 51면.

51) 송오식, 위의 논문, 50면; 이경희, 앞의 논문, 526면.

52) 이경희, 위의 논문, 526면.

의 경우 모가 국민이므로 출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국적법 제2조 1항 1호). 이 경우 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부가 귀화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결혼이민자도 아니므로 다문화가족법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새기게 된다.⁵³⁾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동법 제14조).⁵⁴⁾

다문화가족법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관계에서 자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재한외국인으로서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한다. 또 다문화가족법 제14조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동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범위에 해석론이 남게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준혼 관계, 즉 다문화가족에 준하는 가족이라고 보아 민법 제799조의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취지상 다문화가족으로서 지원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⁵⁵⁾

나. 불법체류자 문제

다문화가족법상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동법 제2조 제3호 참조)상 결혼이민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53) 송오식, 앞의 논문, 50면.

54) 이경희, 앞의 논문, 527면.

55) 같은 견해: 이경희, 앞의 논문, 527면, 이와는 다른 견해: 송오식, 앞의 논문, 51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 체류자인 경우에는 재한외국인으로서 보호대상이 될 뿐이다.'고 한다.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 제2조 3호). 문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동법 제2조 1호)를 말하므로, 불법체류자는 결혼이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법상의 결혼이민자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불법체류인 노동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원용한 다문화가족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여 보호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입법목적 및 입법취지가 다른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로 보편화된 불법체류자들을 보호 대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⁵⁶⁾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취급과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문제가 반드시 동일한 법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인권적 보호와 인간적 처우는 존재 그 자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는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존재의 근거에 관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배한 자로서 그에 따른 법적 제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그 자체를 박탈당하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만일 불법체류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면 그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양산과 법질서의 혼란 등의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불확정한 사실의 예단일 뿐이고 어느 정도의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체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명백히 증

56) 이경희, 앞의 논문, 528면.

57) 송오식, 앞의 논문, 53면.

명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⁵⁸⁾

따라서 국가의 재정여건상 불법체류자와 장기 유학생인 순수 외국인까지 지원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 통합 및 공존의 시대에 걸맞고 국가 재정적 고려를 토대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⁵⁹⁾

V. 결 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로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북한이주민, 장기 유학생 등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범위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지원 대상범위에서 빠져있다. 이는 다문화가족법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의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포섭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보아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를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혼인이 해소된 결혼이민자, 북한이주민,

58) 이경희, 앞의 논문, 529면.

59) 송오식, 위의 논문, 54면.

장기 유학생,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까지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법 제2조(정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종환,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프랑스 편 -」, 한국법제연구원, 2012.11.
- 김유경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4, 2008. 12.
- 김유경외,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김윤나, “시민청소년관점에 비추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 및 발전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4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2.08.
- 민말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과 경남의 과제”, 「경남정책 Brief」, 경남발전연구원, 2011.04.
- 박복순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44, 여성가족부, 2013.12.
- 배진아,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캐나다 편-」, 한국법제연구원, 2012.11.
-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02.
- _____, “다문화가족 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법제」 통권 제633호, 법제처, 2010. 09.
-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법학논총」 제3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4.
-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02.
- 이소희외,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2001.
- 이승우,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9.12.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08
정도희,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종합 편 -」, 한국법제연구원, 2012.11.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3.
정혜영,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7호, 안암법학회, 2008.09.
최종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법제 발전 방향 연구」, 법제처,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and Ext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 social unification**

Kim, Sang-Myeong
Ph.D, Associate Professor,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If the emigration of the foreigner increases rapidly, I get together and the importance of the foreign policy is recognized. The adaptation problem that farm village woman marriage emigrant people increasing particularly rapidly experience is a tangle between couple and abuse.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defines multicultural family as a family united by a person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upon birth and marriage immigrant. Therefore, immigrants without marriage purpose, such as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not included to the focus of support. And de-facto marriage and illegal immigrants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by this act.

And the fact that the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s in a state of flux, varying as the viewpoints of interpretation of this act which makes it too

narrow or too broad, is seriously not coincident with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This article is aimed to interpret the concept and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is act and presen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Key words : Multicultural,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Marriage Immigrant, Foreign Worker, Social unification